

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번호	2330
------	------

제출일자 : 2023. 5. 31.

제 출 자 : 금 천 구 청 장

1. 제안이유

국민들이 행정 분야에서 만 나이 사용 원칙을 쉽게 알 수 있도록 「민법」(법률 제19098호, 2022. 12. 27. 공포, 2023. 6. 28. 시행) 과 「행정기본법」이 개정(법률 제19148호, 2022. 12. 27. 공포, 2023. 6. 28. 시행)됨에 따라 만 나이 규정을 일괄 정비하여 법체계의 통일성과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사회적 관행을 확립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조례 중 나이 규정에서 “만” 표시 삭제(안 제1조부터 제13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민법」 제158조 및 「행정기본법」 제7조의2

나. 예산조치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기관: 조례 소관 부서와 합의

라. 기 타

- 1) 신·구조문 대비표: 별도첨부
- 2) 입법예고: 생략
 -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제1항제4호(단순한 표현·자구를 변경하는 경우)
- 3)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: 별도첨부
- 4) 규제사전심사: 원안동의(기획예산과)
- 5) 부패영향평가: 원안동의(민원감사담당관)
- 6) 성별영향분석평가: 원안동의(가족정책과)

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
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

제1조(「서울특별시 금천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금천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만6세~12세”를 “6세~12세”로 한다.

제2조(「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고용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고용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호 중 “만 36세”를 “36세”로 한다.

제5조제2호 중 “만 36세”를 “36세”로 한다.

제3조(「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 기본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8조제6항제1호 중 “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”를 “19세 이상 39세 이하”로 한다.

제4조(「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 창업 지원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 창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3호 중 “만 39세”를 “39세”로 한다.

제5조(「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」의 개정)

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호 중 “만 65세”를 “65세”로 한다.

제6조(「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

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만 100세”를 “100세”로 한다.

제5조 중 “만 100세”를 “100세”로 한다.

제6조제1항 중 “만 100세”를 “100세”로 한다.

제7조(「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」의

개정)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만65세”를 “65세”로 한다.

제8조(「서울특별시 금천구 영유아보육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
금천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2조의3제2항 중 “만6세”를 “6세”로 한다.

제9조(「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」의 개정)
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
개정한다.

제2조제1호 및 제4호 중 “만 18세”를 각각 “18세”로 한다.

제4조 단서 중 “만 18세 이하”를 “18세 이하”로, “또는 만 18세”를 “또는
18세”로 한다.

제10조(「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」의 개정) 서
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
한다.

제2조의2제1항제11호 중 “만13세”를 “13세”로 한다.

제11조(「서울특별시 금천구 보건소 수가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
금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제6호의2 중 “만65세”를 “65세”로 한다.

제12조(「서울특별시 금천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금천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 중 “만 65세”를 “65세”로 한다.

제13조(「서울특별시 금천구 어르신 안심주치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금천구 어르신 안심주치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 중 “만 65세”를 “65세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

신 · 구조문대비표

1.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」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“돌봄 아동”이란 서울특별시 금천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<u>만 6세~12세</u> 이하의 아동이나 구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을 말한다.</p> <p>2. ~ 4. (생략)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----- ----- <u>6세~12세</u> ----- -----</p> <p>2. ~ 4. (현행과 같음)</p>

2.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고용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」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“중장년층”이란 주민등록상 <u>만 36세</u>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.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----- <u>36세</u> ----- -----.</p>

<p>3.·4. (생략)</p> <p>제5조(대상자) 고용보조금을 지원 받으며 근무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에 해당하여야 한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주민등록상 나이가 <u>만 36세</u> 이상의 중장년층에 해당하는 미취업자</p> <p>3. ~ 5. (생략)</p>	<p>3.·4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5조(대상자)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----- <u>36세</u> ----- ----- -----</p> <p>3. ~ 5. (현행과 같음)</p>
---	--

3.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 기본 조례」

현행	개정안
<p>제18조(청년 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) ① ~ ⑤ (생략)</p> <p>⑥ 청년시설의 입주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</p> <p>1. 서울시에서 활동하는 <u>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</u>의 개인 및 단체(대표자)</p> <p>2. (생략)</p>	<p>제18조(청년 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) ① ~ ⑤ (현행과 같음)</p> <p>⑥ ----- -----</p> <p>1. ----- <u>19세 이상 39세 이하</u>----- -----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

4.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 창업 지원 조례」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·2. (생략)</p> <p>3. “청년 창업자”란 <u>만 39세</u> 이하의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를 말한다.</p> <p>4. (생략)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·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----- <u>39세</u> ----- ----- -----.</p> <p>4. (현행과 같음)</p>

5.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」

현 행	개 정 안
<p>제4조(통합돌봄의 대상) 통합돌봄의 대상자(이하“대상자”라 한다)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.</p> <p>1. <u>만 65세</u> 이상인 사람 중 통합돌봄 지원이 필요한 사람</p> <p>2.·3. (생략)</p>	<p>제4조(통합돌봄의 대상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<u>65세</u> ----- -----</p> <p>2.·3. (현행과 같음)</p>

6.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」

현행	개정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“장수어르신”이란 주민등록상 <u>만 100세</u>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.</p> <p>2. (생략)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----- -- <u>100세</u> ----- --.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5조(신청안내)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(이하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제3조의 지급대상자에게 <u>만 100세</u>에 이르는 날이 속한 달부터 2개월 전까지 장수축하금 신청 안내문을 송부하여야 한다.</p>	<p>제5조(신청안내) ----- ----- ----- <u>100</u> <u>세</u>----- -----.</p>
<p>제6조(신청 및 지급방법) ① 장수어르신이 장수축하금을 신청하고자 할 때는 <u>만 100세</u>가 되는 달부터 1개월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장수축하금 지급신청서를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② ~ ④ (생략)</p>	<p>제6조(신청 및 지급방법) ① ----- ----- ----- <u>100세</u>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② ~ ④ (현행과 같음)</p>

7.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」

현행	개정안
<p>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“노인”이란 「지방자치법」 제1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금천구(이하“구”라 한다) 관내의 <u>만65세</u> 이상의 주민을 말한다.</p> <p>2. (생략)</p>	<p>제2조(용어의 정의)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----- ----- -----</p> <p><u>65세</u> -----.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

8.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영유아 보육 조례」

현행	개정안
<p>제22조의3(회원) ① (생략)</p> <p>② 개인 회원가입 대상은 <u>만6세</u> 미만 취학 전 아동의 직계존속 또는 법정보호자로서 금천구 거주자 또는 금천구 소재 직장인으로 한다.</p> <p>③ (생략)</p>	<p>제22조의3(회원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<u>6세</u>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

9.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」

현행	개정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“아동 생활안전보험”이란 서울특별시 금천구민 중 <u>만 18세</u> 이하의 아동을 대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와 보험기관 간에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.</p> <p>2.·3. (생략)</p> <p>4. “아동”이란 「주민등록법」 제8조에 따라 구 관할구역 내에 주민등록 신고를 한 <u>만 18세</u> 이하의 아동을 말한다.</p> <p>5. (생략)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 ----- 1. ----- ----- <u>18세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2.·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----- ----- ----- <u>18세</u> ----- ----- ----- 5.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4조(가입대상) 피보험자는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. 다만, 등록 외국인 중 <u>만 18세 이하의 아동 또는 만 18세</u>를 초과한 구민이면서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가입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.</p>	<p>제4조(가입대상) ----- ----- ----- ----- <u>18세 이하</u>----- <u>또는 18세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

10.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」

현행	개정안
<p>제2조의2(주차요금의 감면 등) ① 구청장은 제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.</p> <p>1. ~ 10. (생략)</p> <p>11.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(두 자녀이상, 단 막내가 <u>만13세</u> 이하)가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두 자녀는 주차요금의 3 0%, 세 자녀 이상은 50%를 할인할 수 있다.</p> <p>12. ~ 14. (생략)</p> <p>②·③ (생략)</p>	<p>제2조의2(주차요금의 감면 등) ①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10. (현행과 같음)</p> <p>11. ----- ----- <u>13세</u>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2. ~ 14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·③ (현행과 같음)</p>

11.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보건소 수가 조례」

현행	개정안
<p>제3조(수수료 및 진료비 면제 등) ① (생략)</p> <p>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면제할 수 있다.</p>	<p>제3조(수수료 및 진료비 면제 등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.</p>

13.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어르신 안심주치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

현행	개정안
제5조(지원대상) 안심주치의 지원 대상은 금천구에 주소를 둔 만 <u>65</u> 세 이상 어르신으로 한다.	제5조(지원대상) ----- ----- <u>65</u> <u>세</u> -----.

**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초등학생
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**

1. 비용발생 요인

- 해당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3조제2항제1호
 -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, 한시적인 경비로써 총 3억원 미만인 경우

3. 미첨부 사유

- 비용발생요인 없음

4. 작성자

작성자 이름	기획예산과 의회법제팀 최민혜
연 락 처	2627 - 1110

관계 법령

■ 「민법」

제158조(나이의 계산과 표시)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(滿) 나이로 계산하고, 연수(年數)로 표시한다. 다만,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(月數)로 표시할 수 있다. [시행 2023. 6. 28.]

■ 「행정기본법」

제7조의2(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) 행정에 관한 나이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(滿) 나이로 계산하고, 연수(年數)로 표시한다. 다만,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(月數)로 표시할 수 있다. [시행 2023. 6. 28.]